

【논문】

## ‘자유란 자기모순적인 개념이다’

- 셸링 초기 철학에서 드러나는 자유 개념의 역리\* -

이정환\*\*

【주제분류】 독일관념론, 자유이론

【주요어】 무제약자, 자기긍정, 자유, 자율, 해방

【요약문】 이 글은 셸링의 철학적 사유 여정 전체를 추동시키는 핵심 문제인 자유 개념의 자기모순성이 당장 그의 초기 철학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를 위한 도입으로 먼저 필자는 본문 II장에서 “자유는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의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어려움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유 개념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가 어떻게 자기모순이라는 불합리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살핀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밝힌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를 둘러싼 문제가 철학적 사유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되는 하나의 전형으로서 셸링의 초기 저작 중의 하나인 『철학적 원리로서의 자아, 그리고 인간 지식에 있어 무제약자에 대하여』(1795)의 논의를 살핀다. 이 저작의 논의 과정에 대한 추적은 통해 필자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시도가 초래하는 어려움이 당장 셸링의 초기 철학적 국면에서 자유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 자체가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중대한 난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학술 논문 게재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I. 들어가는 말

“자유” (liberty; Freiheit)<sup>1)</sup>란, 서양근대사의 맥락에 한정해서 볼 때, 남다른 위상을 차지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서양 근대 인문주의의 근본 기획은 체계와 제도라는 외적인 강제 - 예컨대 종교상의 교조주의, 억압적인 정치 체계, 봉건제라는 사회 경제상의 속박 등 - 로부터 개인의 해방에 대한 요구, 이른바 ‘자유를 향한 요구’를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에 그 본질이 있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sup>2)</sup> 자유를 향한 요구를 정당화하려는 서양 근대 인문주의의 시도가 특히 철학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방식의 한 전형을 우리는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자유의 고유한 본질을 온전히 포착해내는 규정, 이른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 (der positive Begriff der Freiheit)으로서 “자율” (Autonomie)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그는 자유를 향한 우리의 요구가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현실세계에서 실천적 주체라는 인간됨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지시하는 정당한 ‘구호’임을 밝히고 고자 하였다.

그런데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칸트가 제시한 자율 개념은 - 이 개념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데 있어 가지는 탁월한 응축력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 이론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up>3)</sup> 칸트의 자율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1) 이하에서 괄호 안의 유럽어 보충은, 번역된 특정 인용문구의 원어를 지시하기 위해 괄호 보충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예: “무제약자 (das Unbedingte)”), 영어와 독일어를 병기함.

2) Krings, 1973, 493쪽 참조.

3) 라인홀트 (Carl Leonhard Reinhold, 1757-1823)로 거슬러 올라가는 칸트의 자율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자율 개념에 대한 라인홀트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서술은 주2 참조)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한 Prauss의 상세한 연구 (Prauss, 1983)를 기점으로 최근 몇 십 년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Patzig, 1985; Allison, 1986; Schulte, 1988; Bojanowski 2006, 229쪽; Korsgaard,

문제의 핵심은 - 각각의 문제제기가 가지는 강도와 표현상의 차이를 도외시한다면 -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편으로 자율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은 물론이거니와 악도 또한 스스로 선택할 능력’으로서 자유 개념이 함께 요구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후자의 자유 개념을 요구하는 일은 자율로서 자유의 본질과 상충된다. 말하자면 자율은 모순 없이는 결코 생각될 수 없는 ‘문제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유란 하나의 구호 (Parole)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 (Problem)다”라는 리델의 말<sup>4)</sup>은 특히 칸트의 자유 개념이 처한 사정에 적종하는 진술로 차용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의 자율 개념에 대해 제기되는 앞서의 문제는 필자의 견해로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제시하려는 칸트의 시도 -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 -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어려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칸트의 자율 개념이 처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실제로 칸트 이후의 독일고전철학, 특히 셸링 (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을 통해 분명한 형태로 제시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칸트의 자율 개념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셸링이 제시하는 통찰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자 한다. ‘칸트의 자율 개념은 한편으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이해로부터 불가피하게 도달하게 되는 이론적인 요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율은, 이 개념을 불가피한 것으로서 요구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이해와 모순되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본 논문은 셸링이 그의 지난한 사유 여정을 통해 비로소 분명한 형태로 제시하게 되는 앞서의 통찰이 - 비록 아직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 당장 그의 최초의 철학적 국면에서 단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점

2009, 159쪽 이하; Brandt, 2010, 71-80쪽; Schmidt, 2012; Noller, 2015 참조.

4) Riedel, 1979, 201쪽.

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아래의 II장에서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증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율 개념이 내포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이 개념을 획득하려는 논증 과정으로부터 초래되는지를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이어지는 III장에서 필자는, 앞선 II장에서 재구성한 칸트의 어려움이 당장 셸링의 초기 철학에서 어떻게 자유에 대한 철학적 해명 시도 일반이 내포하는 아포리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재현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특히 셸링의 초기 저작 중 하나인 『철학적 원리로서의 자아, 그리고 인간 지식에 있어 무제약자에 대하여』(이하 『자아』)의 논의에 주목한다. 이 저작에서 셸링은 칸트 이후의 독일철학계가 설정한 선도 과제 – 즉 자유를 철학의 원리로 제시함으로써, 칸트 철학에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 – 를 수행하고자 의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의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셸링은 오히려 이 의도와 어긋나게도 자유 개념의 해명과 관련하여 칸트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좀 더 첨예화된 형태로 드러내게 된다는 점을 본 논문은 밝히고자 한다.<sup>5)</sup>

5) 이는 곧, 셸링 철학 전체에 있어서 『자아』가 가지는 의미를, 이 저작에 대한 종래의 연구가 대체적으로 그러했듯이, 이 저작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해명’에서 찾기 보다는, 오히려 이 저작이 그의 명시적인 의도 이면에서 노정시키고 있는, 나아가 이후의 셸링의 철학적 사유를 추동시킬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임을 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아』를 하나의 ‘문제적인 저작’으로 읽어내야 이 저작이 셸링 철학 전체에서 가지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제적인 저작으로 『자아』를 해석하고자 하는 필자의 입장은 이 저작에 대한 몇몇 선행 연구, 특히 Loer와 Sandkaulen의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선 Loer는 그의 연구에서, 셸링 철학은 이미 그의 초기 국면에서부터 자유 개념의 아포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른바 “아포리 테제”를 처음으로 분명한 형태로 제시한다. 무제약자로 제시되는 셸링 초기 철학의 자유 개념은, 이 무제약자로부터 하나의 결과로서 해명되어야 할 제약된 자를 동시에 무제약자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일종의 아포리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Loer, 1974, 150 쪽 이하). 나아가 Sandkaulen은 이러한 아포리로부터 빠져 나오려는 시도가 셸링 철학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셸링 철학의 초기 국면의 주요 저작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밝혔다 (Sandkaulen, 1990). 이러한 선행 연구에 바탕하여 본 논문은, 셸링 철학의 근본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자유 개념의 아포리는, 자유의 긍정

## II.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증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어려움

### 1. “자유” 개념에 이르는 칸트의 논증

1780년대에 출간된 그의 두 가지 주요한 도덕철학적 저서들<sup>6)</sup> 중 첫 번째 작품인 『윤리형이상학정초』에서 칸트는 자유 개념에 대한 자신의 핵심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은 진술로 제시한다.

“자유는 그것을 규정하는 외래의 원인들에 독립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필연성은, 외래 원인들의 영향에 의해 활동하게끔 규정받는, 모든 이성 없는 존재자들의 원인성의 속성이다. 앞서 한 자유에 대한 설

---

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증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서양근대철학의 주요 문제 즉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 자체가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자아』에서 드러나는 자유 개념의 아포리에 대한 이러한 해명을 통해 필자는, 셸링 철학 전체를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가 내포하는 어려움과 이를 해명하려는 시도의 과정이라는 하나의 시종일관된 사유의 여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명을 통해 특히 본 논문은, 최근 국내에서도 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셸링 초기 철학의 의미를 문제사적인 맥락에서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또한 담고 있다 (셸링 초기 저작들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로는 강영안, 1990; 박영선, 2008; 이광모, 2013 등 참조). 이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셸링 초기 철학에 대한 기존의 고전적인 연구 성과에 바탕하여, 셸링의 초기 철학이 당시 철학계의 논쟁사적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와 여러 다른 철학적 체계들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성실하고 치밀한 서술과 함께 이 초기 국면의 철학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유익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 연구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셸링 철학에 대한 국내 철학계의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셸링 초기 철학의 저작들, 특히 본 논문에서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는 『자아』가 셸링의 철학적 사유 여정 전체의 발전사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문제적인 저작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주제화시키는 일에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더욱이 『자아』에서 셸링이 드러내는 문제가,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어려움이라는 서양근대철학의 커다란 문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생산적인 의미를 발굴 해내는 일을 이들 선행 연구는 미답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 6) 『윤리형이상학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785)와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

명은 부정적인 것 (negativ)이고, 그래서 그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별 성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그에 대한 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고 성과 있는, 긍정적인 개념 (positiver Begriff)이 나온다.”<sup>7)</sup>

위 인용의 첫 번째 문장에서 칸트는 “외래의 원인들로부터 독립적임” (unabhängig von fremden Ursachen)이라는 자유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자유라는 말이 지시하는 사태의 본질적인 내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는, 이른바 “자유<sup>8)</sup>의 부정적인 개념” (der negative Begriff der Freiheit)에 불과하다고 그는 위 인용의 세 번째 문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 자유를 “외래의 원인들에 영향을 받음”이라는 “자연필연성”의 부정태로서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흄스로 대표되는 종래의 자유 개념<sup>8)</sup>의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 칸트는 자유의 본질을 그 자체로서 온전히 드러내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에 대한 온전한 규정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의 해명을 위해 칸트는 위 인용의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그는, 비록 자유의 첫 번째 정식은, 그 자체로 보자면, 그의 부정성으로 인해 자유라는 사태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규정, 이른바 “자유<sup>8)</sup>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이 긍정적인 개념에 이르기 위한 철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바꾸

7) Kant-AA IV 446; 『윤리형이상학정초』, 백종현 옮김, 2005, 201쪽 (번역문의 일부 수정은 필자의 것). 이하 칸트 인용문의 출처는 프로이센학술원판전집 (Kant-AA)에 의거함. 인용문 출처 표기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숫자는 학술원판전집 권수를,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의미함. 아울러 위 인용문을 포함한 이하에서의 밑줄강조는 필자의 것.

8) “자유[라는 단어]는 본래 반대의 부재를 지시한다 (반대라는 말로 나는 운동에 대한 외적인 방해를 의미한다.” (Hobbes, 1980 (11651), 187쪽 참조. 이 인용문을 포함한 이하의 꺾인 괄호 보충은 필자의 것).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흄스는 자유의 본질을 ‘외적인 방해가 부재’한 상태로 이해한다. 특정한 사태의 부재라는 부정성을 자유의 본질로 이해하려는 흄스식의 자유 개념을 벌린 (Isaiah Berlin)은 “~으로부터의 자유” (liberty from)라는 정식으로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Berlin, 1969, 201쪽 참조).

어 말해, 자유의 첫 번째 정식이 가지는 부정성 내지는 불충분성을 확인함을 통해 비로소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개현될 여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그의 긍정적인 개념을 이끌어내는 일을 칸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일종의 귀류법적인 논증을 동원하여 첫 번째 자유 개념의 부정성을 드러내곤 자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첫 번째 자유 개념을 – 가령 흡스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 자유라는 사태의 본질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규정으로 간주할 경우에 어떠한 난점에 빠지게 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첫 번째 자유 개념의 불충분성 내지는 부정성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외부에서 부과된 원인 또는 법칙으로부터 독립해 있음’을, 다른 규정을 통한 보충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 자유란 그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음”(Gesetzlosigkeit) 혹은 “규칙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음”(Regellosigkeit)<sup>9)</sup> 이상의 다른 사태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법칙 또는 규칙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어떠한 특정한 근거로부터도 동기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하여 그 행위는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자유로운 행위’란 결국 ‘우연적인 사건’과 어떠한 구분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우연성이 함의하는 자기파괴적인 본성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특정한 근거로부터도 동기지워지지 않는 ‘우연적인 행위’란 – 도대체가 그러한 종류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차치하고서라도 – 행위자가, 그의 행위로 인해 그 자신의 존립 자체가 완전히 파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어떠한 고려나 거리낌도 가지지 않고 하는 행위로

9) Kant-AA XIX 289쪽 참조.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유란 이 경우 ‘자기파괴적인 맹목성에 내맡겨져 있음’이라는 “더 없이 끔찍한 사태” (nichts schrecklichere s)<sup>10)</sup>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기파괴적인 폭력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은 기실 가장 지독한 형태의 타율성에 다름 아니다. 결국 애초에 자유의 본질을 ‘일체의 타율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극단적인 형태의 타율성에 내맡겨져 있음’이라는 불합리로 귀결<sup>11)</sup>되며,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지금까지 언급한 자유에 대한 이해를 “허무맹랑한 것” (Unding)<sup>12)</sup>으로 표현한다.

이상의 논거에 바탕하여 그는 이제, 어떤 존재자가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결코 그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고 이러한 결론에 바탕하여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칙에 영향받는 자를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존재자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이제, 이 존재자가 ‘내적인 강제’로부터 동기지워질 수 있음, 그러니까 ‘오로지 그 자신으로부터 산출된 법칙에 따라서만 자기 자신[의 행위 준칙]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오로지 자발적으로 산출된 법칙에 따라 자기를 규정함, 이른바 “자율” (自律; Autonomie)이야말로 자유라는 사태

10) Kant-AA XXVII, 1320.

11) 자유를 오로지 몰법칙성, 혹은 몰규칙성으로 이해할 경우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포컸는 이른바 “자유 역설” (paradox of freedom)이라는 개념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정식화한다. 즉 자유란, 그것이 오로지 몰법칙성으로 이해되는 한, 자유롭지 않을 자유 즉 자신의 자유로움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자유라는 자기파괴적인 폭력성마저도 자신의 내용으로 포함하게 되는 역설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제한적인 자유는 자유의 반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Popper 1958, Bd.2, 157쪽 참조).

12) “그래서 자유는, 비록 자연법칙들에 따르는 의지의 성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혀 무법칙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변적인 법칙들에 따르는 원인성 (Causalität nach unwandelbaren Gesetzen)이되,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유 의지란 무물 [=허무맹랑한 것] (Unding)일 터이니 말이다” (Kant-AA IV 446쪽, 『윤리형이상학정초』, 백종현 옮김, 2005, 201쪽).



의 면모를 충분히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규정 즉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지금까지 살핀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에 대한 칸트의 해명을 그 자신은 『윤리형이상학정초』에서 다음과 같은 정식으로 응축한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의지란 곧 [그 자신이 자발적으로 산출한] 도덕법칙 아래 놓여 있는 의지이다.”<sup>14)</sup>

## 2. 칸트의 자율 개념으로부터 제기되는 어려움

지금까지 살폈듯이, 칸트는 종래의 자유 개념 – 즉 ‘외부의 강제로부터 독립적임’이라는 규정 – 이 가지는 부정성 내지는 불충분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율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자유라는 사태에 대한 유일무이한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논증해냈다. 이제 칸트는, 앞서 간접적인 논증 방식을 통해 하나의 이론적인 요구로서 도출된 자율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의 과제 앞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의 온전한 규정 즉 그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이 자율 개념 자체에 대한 해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명의 과제는 당장 자율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주어진다. 과연 앞서 살핀 칸트의 주장처럼 ‘자발적으로 산출한 법칙 아래에 자기 스스로를 종속시킴’ – 이를 그는 “선택”이라는 도덕적 술어로 표현한다<sup>15)</sup> – 을 자유로움이라는 사태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보충도 필요치 않는 충분하고 완전한 규정으로 이해해

13) “그렇다면 의지의 자유가 자율,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Kant-AA IV 447쪽, 『윤리형이상학정초』, 백종현 옮김, 2005, 201쪽).

14) “Also ist ein freier Wille und ein Wille unter sittlichen Gesetzen einerlei” (같은 곳).

15) “단적으로 선택한 의지는 그것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으로 보인,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이다” (같은 곳).

도 문제가 없는가? 달리 묻자면, 오로지 의지가 선하다는 것이 곧장 이 의지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해도 무방한가?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우리가 오로지 선함만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자유란 사실상 도덕적 필연성을 의미할 것이며, 결국 칸트의 자유 이론은, 이미 그의 동시대인에 의해 분명하게 지적되었듯이, 또 다른 의미의 결정론 내지는 숙명론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런데 자유를 도덕적 필연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자발적으로 산출된 법칙에 따라 자기를 규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말하자면 단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결단’하였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비로소 선한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바꾸어 말해, ‘악할 수도 있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산출한 법칙을 “자기 의사(意思)에 따라”(willkürlich)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준칙(Maxime)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는 가능성이야말로 정작 “선한 의지”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sup>17)</sup>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자율로서 자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 법칙의 자발적인 산출 능력과 ‘별도로’ 산

16) 칸트의 자율 개념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는 칸트의 동시대인이자 그의 탁월한 대변자로 자리매김되는 슈미트(Carl Christian Erhard Schmid, 1761-1812)를 통해 주체화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의 자율에서 자유의 본질을 찾으려는 칸트의 시도를 엄밀하고 일관되게 끌고 나갈 경우 이른바 “예지적인 숙명론”(Intelligibler Fatalismus), 내지는 “예지적인 결정론”(Intelligibler Determinismus)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칸트의 자율 개념에서는 오로지 선을 행할 자유만이 있을 뿐, 그의 반대 즉 악을 행할 자유를 위한 어떠한 이론적 공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악을 행할 자유를 칸트의 자율 개념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면, 칸트의 자율 개념 자체의 붕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슈미트는 칸트의 실천 형이상학에 바탕하는 자신의 이론을 예지적인 숙명론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Schmid 1790, 209쪽 §255 이하 참조).

17) 이러한 반문은 실제로 칸트의 또 다른 동시대인인 라인홀트에 의해 제기된다. 라인홀트의 칸트 자율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로부터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2 참조.

출된 법칙을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준칙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내지는 주관적인 근거’를 가정하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 악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별도의 능력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자가당착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관의 능력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 법칙을 산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칙을 행위 준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법칙 산출 능력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

이상의 문제에 대해 칸트 자신은, 앞서 언급한 두 도덕철학적 저서에 후속하는 한 논문인 「인간 본성에 있어서 근본악에 대해서」(이하 「근본악」)<sup>18)</sup>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해명을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악을 – 그리하여 선 또한 – 자유로운 행위 주체에 귀속된다는 점<sup>19)</sup>을 해명하기 위해 법칙의 자발적인 산출 능력과 산출된 법칙을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능력 간의 날카로운 구분을 제시한다. 전자의 능력을 칸트는, 앞서 두 도덕철학적 저서에서 밝혔듯이, 순수한 의지 내지는 실천이성에 고유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반면, 이제 이와 구분되는 후자의 능력 내지는 주관적인 근거를 그는 특별히 “의사”(意思, Willkür)라는 말로 표현한다.<sup>20)</sup> 더욱이 의사라는 능력을 그는 「근본악」에서 일종의 “절대적인 자발

18) “인간 본성에 있어 근본악에 대해서”(Über das radikale Böse in der menschlichen Natur)라는 제목으로 1792년 4월 베를린월보(Berlinische Monatschrift)에 발표된 이 논문은 1년 후인 1793년 『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라는 단행본 저서의 “제1편”(Erstes Stück)으로 편입되어 출간된다.

19) “우리는 실로 악으로의 성벽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악으로의 성벽은 주관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유로이 행위하는 존재자로서의 주관 안에서 마주치는 것이므로, 스스로 죄책이 있는 주관에게 귀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Kant-AA VI 35, 『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백종현 역, 2011, 204-205쪽).

20) “도덕적-악은 단지 자유로운 의사(freie Willkür)의 규정으로서만 가능하되, 이 의사는 그것의 준칙을 통해서만 선 또는 악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악은 준칙들을 도덕법칙에서 이탈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근거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성”<sup>21)</sup>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능력이 법칙의 자발적 산출 능력으로서 실천 이성에 대해 가지는 구분의 근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이로써 칸트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절대적 자발성,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법칙을 산출하는 능력으로서 실천이성 - 또는 순수한 의지 - 의 절대적인 자발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산출된 법칙을 준칙으로 채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으로서 “의사의 절대적 자발성”을 가정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만약 칸트가 「근본악」에서, 우리가 추측하듯이,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절대적 자발성을 가정한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좀 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율로서 자유 개념의 실질적인 근거를 해명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절대적 자발성을 가정함으로써 인해, 오히려 자율 개념으로 애초에 드러내려고 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자율 개념으로 애초에 드러내려고 했던 자유의 고유한 본질이란,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개입도 없이 오로지 자

(Kant-AA VI 29, 『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 백종현 역, 2011, 194쪽. 이하 인용문에서 밑줄 강조는 필자의 것.)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사”(意思)로 번역한 “Willkür”라는 단어에 대한 칸트의 용법이다. 「근본악」에서 그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통 자의 내지는 임의라는 말로 번역할 때 염두에 두는 부정적인 의미 - 즉 ‘어떠한 특정한 근거에 바탕하지 않는 즉흥적인 의지’ - 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 단어가 본래부터 함축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 - 즉 ‘특정한 근거에 바탕하여 심사숙고하는 의지’ - 로 사용한다. 후자의 의미는 당장 Willkür라는 단어 자체가 “Wille”(의지)와 “Kür”(선택하다, 고르다를 의미하는 küren의 명사형)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Willkür라는 말은, 이 말의 본래적인 함의를 풀어보자면, “의지가 - 내지는 의지를 - 선택함”(Kür des Willens)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언가가 - 내지는 무언가를 - 선택하는 과정은 특정한 기준과 근거에 바탕하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전제한다. 따라서 Willkür란, 그의 어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떠한 이성적인 바탕이 없는 즉자적인 욕구나 의지와 반대되는 종류의 의지, 즉 숙고와 사려의 과정을 동반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21) “의사의 자유는 매우 특유한 성질의 것이어서, 그것은 오직 인간이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한(즉 인간이 그에 따라 처신하고자 스스로 보편적 규칙으로 삼는) 동기 이외의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에만 하나의 동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자율) 의사의 절대적 자발성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Kant-AA VI 24, 『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 백종현 역, 2011, 185쪽).

기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기를 규정함이다.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칙의 자발적인 산출이, 의지가 자기를 규정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칙을 자신의 행위 규정의 준칙으로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법칙을 자발적으로 산출하는 능력 ‘바깥의 또 다른’ 종류의 절대적인 자발성으로서 가정하는 일은, 자율 개념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애초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라는 사태가 자율이라는 개념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모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sup>22)</sup>

22) 악의 가능성이 비롯되는 주관적 근거로서 의사의 자유를 도입함으로써 인해 초래되는 칸트 자유이론의 체계상의 문제는 그의 동시대인인 라인홀트(Carl Leonhard Reinhold, 1757-1823)에 의해 좀 더 첨예하게 제기된다. 편지글의 형식으로 1792년에 발표한 칸트 철학에 대한 연구서(제목: 『칸트철학에 대한 편지들』제2권 (*Briefe über die Kantische Philosophie, Zweiter Band*))에서 그는 칸트의 자유이론을 지적인 숙명론으로 이해하려는 슈미트의 해석을 비판한다. 「근본악」의 논의에 기대어 라인홀트는, 칸트 자신은 - 슈미트의 해석과 달리 - 악을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악의 귀책성을 해명하기 위해 법칙 산출의 능력과 구분되는 법칙의 사용 능력인 의사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명의 과정에서 그는 특히, 칸트가 「근본악」에서 제시한 실천이성에 대한 의사의 자유의 구분을 극단화시켜 해석한다. 즉 칸트가 제시한 실천이성의 능력을 라인홀트는 법칙의 산출 능력으로만 제한하고, 산출된 법칙을 행위의 준칙으로 채택하는 능력을 이 실천이성으로부터 분리시켜 그와는 독립적인 주관의 능력, 이른바 “인격의 능력”(Reinhold, 1792, 502쪽)에 귀속시킨다. 그리하여 칸트가 「근본악」에서 제시한 실천이성과 의사의 자유 간의 구분은 그들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유 간의 구분 - 법칙수립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간의 구분 - 으로 극단화시킨다. 라인홀트의 이원론적 해석으로 인해 칸트의 자유이론에 대한 이해 - 특히 의사의 자유의 실천이성과의 관계 - 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칸트 자신은 1797년에 발표한 그의 후기 도덕철학적 저서인 『윤리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그 자신이 「근본악」에서 제시한 의사의 자유라는 절대적 자발성은 실천이성의 절대적 자발성과 결코 다른 종류의 자유 즉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성이 “현상”(Phänomen)이라는 제약된 지평에서 드러나는 방식, 그러니까 실천이성의 현상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ant-AA VI, 226쪽). 다시 말해 의사의 자유란 자율로서 자유의 순전한 부정태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Kant-AA VI, 213쪽 이하).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칸트는 그의 자유이론에 대한 라인홀트의 이원론적 해석을 분명히 거부한다. 하지만 의사의 자유가 실천이성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유권

### 3. 지금까지 논의의 요약: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증이 직면하는 어려움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증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논증 과정에서 빠지게 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종래의 규정 즉 ‘일체의 타율성으로부터 독립적임’이 가지는 부정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요구로부터 칸트는 자율이라는 새로운 자유 개념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자율이 명실상부한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가지는 면모에 대한 해명의 과정에서, 이 개념으로 드러내려 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애초의 이해를 훼손시키는 불합리에 빠진다. 우선 자유를 순전히 ‘일체의 타율성으로부터 독립해 있음’ 즉 ‘해방’(解放)이라는 부정적인 규정을 통해 정의하려는 종래의 시도는, 칸트가 논증하였듯이, 그와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방을 자유의 본질에 대한 온전한 규정으로 취할 경우 자유로움이라는 사태는 ‘우연성에 내맡겨짐’으로 이해되는데, 우연성에 내맡겨진다는 것은 타율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로부터 칸트는 자유란 그저 ‘타율성으로부터 벗어남’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산출된 법칙으로부터

---

해석은, 한편으로는 자유의 본질을 자율로서 이해하려는 그의 자유이론의 체계적인 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한편으로 그가 의사의 자유에 절대적 자발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했던 것 - 즉 자유의 실재적인 근거로서 악의 근원성 - 을 다시금 무화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의 자유가 자율로서 자유의 부정태에 불과하다면, 의사의 자유로부터 비롯되는 악 또한 선과 근원적으로 대립되는 또 하나의 “능력”(Vermögen)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순전한 불완전태, 그러니까 일종의 결여(Privatio)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당장 칸트 자신도 『윤리형이상학』에서 악을 다시금 일종의 “무능력”(Unvermögen)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단언한다(Kant-AA VI, 227쪽). 이 점에서 의사의 자유에 대해 칸트 자신이 『윤리형이상학』에서 내린 유권해석은 논쟁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다. 칸트의 자유이론을 둘러싼 칸트 당대의 논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Schmidt, 2012 참조. 아울러 이러한 논쟁을 칸트의 자율 개념을 둘러싼 문제(Autonomie-Problem) 맥락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Noller, 2015 참조.

만 자기를 규정함’ 즉 자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야 비로소 온전히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을 도출해낸다. 하지만 자유의 유일무이한 긍정적인 개념으로 제시된 자율 개념 또한 이 개념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기모순으로의 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을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바탕으로 악의 귀책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절대적 자발성을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자율 개념으로 애초에 드러내려 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훼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III. 셸링 철학의 핵심 문제로서 자유 개념의 자기모순성

앞서 비판적인 재구성을 통해 드러난 칸트의 어려움이 실제로 철학적 사유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칸트 이후의 독일고전철학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른바 “무제약자”(das Unbedingte) 또는 “절대자”(das Absolute) 개념의 해명에 대한 칸트 이후의 독일고전철학의 집요한 천착은, 피상적인 관찰로 말미암아 흔히 오해되어 왔듯이, 칸트의 비판철학을 통해 극복된 실체 형이상학으로의 반계몽적인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칸트가 노정시킨 자유 개념을 둘러싼 문제를 철학적 사유의 중심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sup>23)</sup> 그리고 이러한 시도의 전형을 필자는,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히 셸링의 철학적 사유에서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칸트의 어려움이,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탐구 자체가 불가피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중대한 난제로

23) 자유 개념을 둘러싼 문제의 해명을 칸트 이후 독일 철학의 흐름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Düsing, 2006, 107-112쪽; Henrich, 2004, 10-21쪽 참조.

인식되고, 나아가 이 난제의 해명이 철학적 사유의 제일 과제로 부상하게 되는 연유가 동시대의 여느 철학자들에게서보다 셸링의 철학적 사유 여정 전체를 통해 적나라하고 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유 개념의 해명과 관련하여 셸링 철학이 가지는 의미 중에서 특히 아래의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 자체가 당장 하나의 철학적 난제로서 제기되는 일이 셸링의 경우 그의 철학이 막 시작되는 초기 국면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유의 이론적인 해명이 초래하는 어려움에 대한 초기 셸링의 인식은, 그가 1794년과 1795년 사이에 발표한 일련의 초기 저작들<sup>24)</sup> 중 특히 1795년에 출간한 『자아』에서 비교적 분명하고 상세하게 드러난다. 개념 분석적인 고찰을 통해 자유를 철학의 보편적인 원리로서 해명하고자 의도한 이 저작에서 셸링은 – 하지만 이러한 애초의 의도와는 반대로 – 자유에 대한 철학적 해명의 시도 자체가 당장 다음과 같은 역리(逆理; Paradox)를 내포하고 있음을 폭로하게 된다. ‘한편으로 제약된 자로서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부정적인 규정 – 이른바 “무제약성” – 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유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다른 한편으로 자유라는 사태의 본질상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넘어 긍정적인 개념 – 이른바 “절대적인 자기긍정” – 으로부터 이행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은, 이 개념으로의 이행을 요구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애초의 이해 즉 무제약성과 모순된다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자아』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결론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한 칸트의 탐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셸링에게 있어서는 당장 그의 철학의 초기

24) 1794년과 1795년 사이에 셸링은 세 편의 논문, 『철학 일반의 형식의 가능성에 대하여』 (*Über die Möglichkeit einer Form der Philosophie überhaupt*, 1794), 『철학의 원리로서 자아 또는 인간 지식에서 무제약자에 대하여』 (*Vom Ich als Prinzip der Philosophie oder über das Unbedingte im menschlichen Wissen*, 1795) 그리고 『독단론과 비판론에 대한 철학적 편지들』 (*Philosophische Briefe über Dogmatismus und Criticismus*, 1795)을 발표함으로써 철학계에 데뷔하게 된다.



국면에서 자유에 대한 철학적 해명 자체가 내재하는 어려움으로 주체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요약적으로 서술한 자유 개념의 역리에 대한 초기 셸링 철학의 인식을 우리는 이제 그의 『자아』의 논증 과정에 대한 면밀한 추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 보고자 한다.

### 1. 자유가 우리에게 최초로 주체화되는 방식: “무제약자” 또는 “절대자”

자유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셸링은 『자아』에서, 앞서 칸트가 자유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일컬었던 규정인 ‘어떠한 외부적인 제약들로부터 독립적임’, 그러니까 ‘일체의 타율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사정은, 한편으로 제약성 내지는 타율성이라는 현실 세계의 지배적인 존재 상황을 해명할 원리를 자유에서 찾고자 하는 이 저작의 목적과,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하나의 이론적인 탐구 대상으로 주체화하려는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불가피한 일로 여겨진다. 애초부터 타자와의 차이관계 즉 제약연관에 얽매어 있는 존재자인 우리 인간이 제약성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계를 한계로서 근거지우는 원리를 주체화하는 일은, 당장 인간 자신이 처한 제약성이라는 한계를 부단히 부정해 나가는 사유의 노력을 통해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셸링의 생각이다.<sup>25)</sup>

제약된 자의 원리로서 자유가 우리에게 최초로 주체화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모를 표현하기 위해 셸링은 그의 초기 저작에서, 당시 독일 철학계의 중심적인 논의 대상이었던 야코비의 “무제약자” (das Unbedingte) 개

25) 『자아』 AA I/2, 85-86; SW I, 162-163 참조.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를 그의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불가피성을 셸링은, 그의 성숙한 국면의 철학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로 피력한다. “영원한 자유가 [제약되어] 있음과의 대립을 통해 규정되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피했던 일이다” (*initia*, 69).

념을 차용한다. 야코비는 무제약자를 “계약연관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있는 상태”<sup>26)</sup>로 정의한다. 이러한 야코비의 정의에 기대어 셸링은, 자유라는 사태는 일차적으로는 일체의 제약관계 – 그러니까 타자와의 차이관계 –로부터 “단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제화된다고 주장한다.<sup>27)</sup> ‘관계라는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있음’, 그러니까 해방으로서 자유의 본질적인 면모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셸링은 무제약자와 더불어 “절대자”(das Absolut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sup>28)</sup>

## 2. 자유에 대한 최초의 부정적 개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 “절대적인 자기긍정”

비록 셸링은, 앞서 살폈듯이, 야코비에 따라 제약된 자인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는 사태는 불가피하게도 무제약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통해 최초로 주제화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자유에 대한 탐구가 이러한

- 
- 26) “무제약자” 개념에 대한 야코비 자신의 설명은 Jacobi, Friedrich Heinrich, *Ueber die Lehre des Spinoza in Briefen an den Herrn Moses Mendelssohn*, 2. Auflage. Breslau 1789, 425쪽 이하 참조. 야코비 철학에 대한 연구로는 Sandkaulen, 2000 참조. 아울러 야코비의 무제약자 개념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는 Fetzer, 2007 참조. 특히 무제약자로서 자유 개념에 대한 셸링의 규정이 야코비의 무제약자 개념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Sandkaulen, 1990, 13-18쪽 참조.
- 27) “일체의 객체성을 배제하는 자인 절대자”(『자아』 AA I/2, 92-93; SW I, 169); “자유란 바로 일체의 비-아를 단적으로 배제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자아』 AA I/2, 106; SW I, 181). 아래에서 셸링 저작의 인용출처는 가능한 한 바이에른학술원판 전집(AA)과 셸링의 유지에 따라 그의 아들(Karl Friedrich August Schelling)이 편찬한 전집(SW)의 출처를 병기하고, 아직 바이에른학술원판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셸링의 저작의 경우는 셸링의 아들에 의해 편찬된 전집 출처만을 밝힌다. 바이에른학술원판 전집(AA) 출처 표기 중 로마자는 저작의 종류를(I에는 셸링 자신에 의해 출간된 저작들이 속함),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는 각각 권수와 면수를 의미한다. 아울러 셸링 아들에 의해 편찬된 전집(SW) 출처 표기 중 로마자는 권수를, 아라비아 숫자는 면수를 의미한다.
- 28) “절대자”로 번역한 독일어 “das Absolute”의 라틴어 어원인 absolutum는, 그의 본래적인 뜻을 그대로 새기자면,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완전히 풀려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자”(das Absolute) 개념에 대한 설명은 Jacobs, 2010 참조. 특히 서구 근대 철학에서 절대자 개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Brülisauer, 1969 참조.

부정적인 규정에만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셸링이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는 까닭은, 무제약성이라는 개념이 그저 자유라는 사태에 대한 불충분한 규정이어서만은 아니다. 무제약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셸링의 요구는, 이 부정적인 개념만으로 자유라는 사태 전체를 “묶어놓으려는” (fesseln) 시도가 오히려 이 사태를 다시금 –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음에 자유의 본질이 있다고 했던 – “제약된 자” (das Bedingte) 내지는 “사물” (Ding)<sup>30)</sup>로 만들어 버린다는 치명적인 역설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무제약성이란, 이미 이 단어 자체가 보여주듯이, 자기 아닌 것 즉 제약성과의 차이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규정인데, 자기를 규정하는 일을 자기 아닌 것과의 차이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아닌 제약된 자 내지는 사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

- 29) “나는 절대적이며 불변적인 존재를 모든 제약되고 변경 가능한 실존과 구분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언어 또는 플라톤과 정신적으로 유사한 야코비의 언어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불변적인 것, 초감성적인 것을 말하고자 할 때, 그들의 언어와 싸워야만 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절대자는 순전히 인간적 언어의 단어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파악되지 않으며, 그리하여 오로지 우리 인간 안에 놓여 있는 지성 즉 스스로 실현되는 직관만이 우리의 언어적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 AA I/2, 140 SW I, 216).
- 30) 사물이란 셸링에게는 ‘자기 아닌 것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진 결과물’을 의미한다. 사물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타자의존성, 파생성을 셸링은 “제약된 자”로 번역된 “Das Bedingte”라는 단어에 대한 재치있는 어원적 분석을 통해 드러낸다 (『자아』 AA I/2, 89; SW I, 166 참조). “be”라는 접두어가 붙은 독일어 동사에서 접두어 be는 “(그에 뒤 따르는 명사를) 그러한 것으로 만들다”, “그러한 것으로 갖추어 놓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bedingen이란, 그 말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사물 (Ding)로 만들다”, “사물이 되도록 갖추어 놓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bedingt란 바로 이 bedingen의 피동형이며, 따라서 이 단어는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사물로 만들어지다”, 내지는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사물로 되다”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뜻풀이를 통해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사물 (Ding)이란, 이미 그 단어의 용법상, 도대체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진 결과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셸링은 사물이 가지는 태생적인 타자의존성을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사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진술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아』 AA I/2, 89; SW I, 166쪽 참조). 아울러 그는 이러한 뜻풀이에 바탕하여 무제약자를 “결코 사물일 수 없는 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제약자란 결코 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물로 될 수 있는 것, 즉 (경험적) 주체로도 생각될 수 없고, 오직 결코 사물로 될 수 없는 것에 그 본질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자아』 AA I/2, 90; SW I, 166-167).

서 애초에 무제약자 또는 절대자라는 규정으로 드러내고자 의도했던 자유의 본질 즉 ‘타자와의 차이 관계에 자신의 규정을 결코 의존하지 않음’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제약자 또는 절대자라는 규정마저도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는 것이다.<sup>31)</sup>

이상에서 살핀 논거에 바탕하여 셸링은 이제 무제약성이라는 부정적인 규정을 넘어서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론적인 요구를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절대자는 오로지 절대자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것이 절대자라고 한다면, 이는 [...] 오로지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sup>32)</sup>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라는 사태를 그와 다른 사태로부터 규정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사물화로 귀결되며, 이는 곧 자유라는 사태 자체의 지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를 사물화하지 않고 이를 규정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식은 –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논외로 하고 – ‘자유라는 사태의 규정이 다름 아닌 이 사태 자체로부터 주어진다’고 이해함에 있다는 것이 위 인용의 첫 번째 진술을 통해 셸링

31) 이러한 역설에 대한 인식을 셸링은 이른바 “독단론 비판”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한다. ‘제약되어 있음’이라는 지평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이론적인 결과물로서 자유라는 사태를 해명하고자 하는 일체의 체계 이론적인 시도를 셸링은 “독단론” (Dogmatismus) 으로 통칭한다. 독단론의 이러한 시도는 자유를 사물화함으로써, 애초에 규명하려 했던 사태 자체를 지양시켜 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셸링의 독단론 비판의 핵심이다. 이러한 독단론 비판을 통해 셸링이 드러내려는 철학적 근본 입장은, 자유라는 사태는 제약된 차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일체의 제약된 자, 그러니까 사물이 비로소 해명되어야 하는 “원리” (Prinzip) 내지는 “출발” (Ausgang, Anfang)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의 철학적 사유 여정을 관통하는 이러한 자신의 철학적 근본 입장을 셸링은 “철학은 무제약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Das Philosophie soll vom Unbedingten ausgehen)라는 당위적 명제를 통해 표명한다 (헤겔에게 보낸 셸링의 1795년 2월 4일자 서신 (Fuhrmans, 1973, 65); 『자아』 AA I/2, 109; SW I, 184).

32) 『자아』 AA I/2, 90; SW I, 167.

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제약자 또는 절대자는, 이것이 자유라는 사태의 온전한 규정으로 이해되려면, 일체의 타자와의 연관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무제약적임’ 내지는 ‘절대적임’이라는 자유의 본질] 자신만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무제약적인 자’ 내지는 ‘절대적인 자’라는 형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결국 위에서 인용된 진술을 통해 셸링은, 자유의 긍정적인 면모란 ‘일체의 외적인 개입이 없는 본질의 직접적인 자기실현’에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sup>34)</sup> 타자와의 차이 관계 즉 부정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는 본질의 직접적인 자기실현행위를 셸링은 이후의 철학적 국면 – 그의 이른바 “동일성철학”의 국면<sup>35)</sup> – 에서 “[절대적인] 자기긍정” (Selbstaffirmation; Absolute Position von sich selbst)<sup>36)</sup>으로 줌

33)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용문도 참조: “자아는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무제약적인 것으로서 주어진다” (『자아』 AA I/2, 92; SW I, 169).

34) 본질 자신을 통해 그의 실존을 산출한다는 자유의 긍정적인 면모를 셸링은 “절대적인 자기 힘으로부터 자신을 어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단순한 자아로서 정립함” (『자아』 AA I/2, 102 SW I, 179쪽) 또는 피히테의 학문론 (Wissenschaftslehre) 제1원칙을 차용하여 “자아가 자기 자신을 단적으로 정립한다” (『자아』 AA I/2, 113 SW I, 187쪽 주해)라고 표현한다.

35) 동일성철학 (Identitätsphilosophie)이란 1801년 『나의 철학 체계의 서술』(Darstellung meines Systems der Philosophie)이라는 저서를 시작으로 하여 1806년까지의 시기에 발표한 일련의 저서들에서 셸링이 제시한 철학 체계를 의미한다. “동일성철학”이라는 명칭은, 이 시기의 철학체계가 근거하는 입장을 셸링 자신이 “본질과 그의 형식 간의 절대적인 동일성”이라는 정식으로 표현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정식을 통해 셸링은, 절대자는 이미 자신의 본질 안에 그의 드러나 있음의 형식 – 그러니까 실존 – 을 내포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라는 본질주의적 일원론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36) 『부르크부르크강의』 (원제목: *System der gesamten Philosophie und der Naturphilosophie Insbesondere*, 1804) 20절 (SW VI, 169-170). 어떠한 타자성의 개입도 없는 절대자의 자기긍정행위를 셸링은 “거울상적인 자기바라봄” (Spiegelbildliche Selbstanschauung)이라는 유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시도한다. 어떤 자가 절대적으로 자기를 긍정한다는 것은 – 그러한 일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논외로 하고 – 그 어떤 자가 이미 그의 ‘바라봄’의 행위를 통해 곧바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거울상’을 산출하는 행위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거울상적인 자기직관 – 이를 셸링은 피히테의 “지적직관” (intellektuelle Anschauung)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을 통해 셸링은 어떠한 타자성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자기관계의 모델을 구현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브루노』 (원제목: *Bruno oder über das göttliche und natürliche Prinzip der*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 3. “절대적인 자기긍정”이 내포하는 모순에 대한 셸링의 지적

지금까지 살핀 『자아』에서의 셸링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유에 대한 해명은 한편으로는 이를 해명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도 무제약자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바로 이 부정적인 개념을 통해 애초에 드러내려 했던 자유의 본질로 인해 우리는 또한 불가피하게도 무제약자라는 부정적인 규정을 넘어서 그의 긍정적인 개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론적인 요구에 직면한다. 무제약자란, 그 개념으로 표현되는 자유의 본질상 ‘어떠한 타자의 개입도 없이 단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는 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어지는 『자아』의 논의에서 셸링은, 앞선 논의에서 순전히 이론적인 요구로 제시되었던 ‘무제약자의 단적인 자기긍정’ 내지는 ‘절대적 자기긍정’에 대한 본격적인 해명을 수행한다. 즉 무제약자가 자신의 본질을 타자와의 차이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통해 긍정하는 행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자아』의 계속되는 서

---

*Dinge. Ein Gespräch*) SW IV, 237 참조.

37) 자유의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그의 긍정적인 개념으로의 이행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내는 『자아』에서의 셸링의 논의는, 앞서 II장에서 살폈듯이, 『윤리형이상학정초』에서 칸트가 ‘일체의 타율성으로부터 독립적임’이라는 자유의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자율이라는 긍정적인 개념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 상응한다. 즉 오로지 “외래의 원인들로부터 독립적임”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통해서만 자유라는 사태의 고유한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초래하는 불합리를 칸트가 지적하고, 이에 바탕하여 절대적인 자발성 내지는 자율을 자유의 유일무이한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이끌어냈듯이 (II.1 참조), 셸링은 오로지 “무제약성”이라는 부정적인 규정을 통해서만 자유의 본질을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빠지는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바탕하여 “절대적인 자기긍정”이라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자아』에서 셸링이 어떻게 자율로서 자유 개념을 향한 칸트의 논증을 자유에 대한 철학적 탐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달하게 되는 이론적인 요구로서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술<sup>38)</sup>의 주제로 삼는다. 하지만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 실제로 수행되는 가능한 방식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셸링은 앞선 논의에서 제기된 이론적인 요구를 확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기된 이론적인 요구에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제약자가 자기 자신을 단적으로 긍정하는 행위는 불가피하게도, 무제약자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애초의 이해를 훼손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셸링은 도대체 어떠한 논증 과정을 통해 이러한 역설에 이르게 되는가?

먼저 무제약자가 자기 자신을 무제약자로서 긍정하는 일은, 내용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체의 제약성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자’로서 무제약자 자신을 스스로 주체화시키는 행위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무제약자란, 앞서 이 개념에 대한 셸링의 정의에서 살폈듯이, “일체의 제약성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그의 본질 내용으로 가지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런데 ‘제약성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자’로서 무제약자 자신을 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무제약자 자신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자 즉 제약된 자도 함께 주체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무제약자가 자기를 긍정하는 행위는, 셸링에 따르자면, 무제약자가 제약된 자를 그 자신과 ‘절대적인 배제 관계’에 놓여 있는 자로서 무제약자 자신의 영역 “바깥에” 상정하는 일 – 이른바 “제약된 자를 무제약자 자신과 절대적으로 대립시키는” 행위 – 를 수반한다.<sup>40)</sup> 그런데 자기를 실현하기 위

38) 『자아』AA I/2, 105-109 SW I, 182-186쪽.

39) 본문 III.1 참조.

40)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 실제로 수행되는 이러한 방식을 셸링은 피히테의 학문론 제2원칙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아의 정립행위는 비아를 (자아와) 절대적으로 대립시키는 행위, 즉 비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자아』 AA I/2, 113; SW I, 187 주해). 여기서 셸링은, 그의 “무제약자”를 피히테의 “[절대적] 자아 (Ich)”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셸링은 어떠한 타자와의 차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라는 무제약자의 본질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상응하여 그는 무제약자의 이른바 “절대적인 대립행위”를 통해 상정된 “제약된 자”를 피히테의 “[절대적] 비아 (Nicht-Ich)”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셸링은 제약된 자의 태생적인 타자의존성을 좀 더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제약된 자란 결코 스스로 자기 자

해 자기 영역 바깥에 자기 아닌 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무제약자로 표현된 자유의 본질과 모순되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닌 것을 바깥에 상정하고 이를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것은, 이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바로 제약된 자 또는 사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sup>41)</sup> 이러한 이유로 무제약자의 자기긍정행위는 이제 무제약자 스스로를 제약된 자로 만드는 자기모순적인 행위에 다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논증 과정으로부터 셸링은, 무제약자라는 개념으로 표현된 자유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그의 자기긍정행위는 동시에 무제약자 개념으로 표현된 자유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 말하자면 ‘무제약자의 자기지양행위’라는 역설에 봉착하게 된다.<sup>42)</sup>

#### 4.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 내포하는 모순을 해소하려는 셸링의 시도

셸링은 이제 『자아』의 계속되는 부분<sup>43)</sup>에서 자유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맞닥뜨리게 된 딜레마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셸링은, 피히테가 그의 학문론 제3원칙에서 제시한 “[무제약자의] 자기제약행위”(Akt der Selbstbeschränkung)라는 개념에 기댄다.<sup>44)</sup>

앞선 고찰을 통해 우리는, 무제약자의 절대적인 자기긍정이 실제로 가능한 방식은, 무제약자가 그 스스로를 제약된 자와의 차이 관계에 정립하는

---

신을 그러한 자로서 정립할 수 없고, 오로지 무제약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서만, 그러니까 순전히 “무제약자 자신(자아)이 아닌 것”으로서만 정립된다는 것이다(『자아』 AA I/2, 113-115; SW I, 187-189 참조).

41) 본문 III.1 참조.

42) “말하자면 자아가 자신을 비아와 근원적으로 대립시키는 한에서 [...] 자아는 자기 자신을 지양된 것으로서 정립한다”(『자아』 AA I/2, 114-115; SW I, 189), “자아는 자기 자신을 통해 정립된다. 하지만 자기자신을 통해 정립된 바로 이 자아를 통해 비아가 정립되는데, 이로써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지양하게 된다”(『자아』 AA I/1, 282; SW I, 99).

43) 『자아』 AA I/2, 109쪽 이하 SW I, 186쪽 이하.

44) Fichte 1997 (<sup>1</sup>1795), 30쪽 참조.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무제약자가 그 자신을 제약된 자와의 차이 관계에 정립하는 일은, 만약 이를 무제약자가 자신의 영역 “바깥에” 제약된 자를 정립하는 일로 이해할 경우, 무제약자의 본질 자체와 모순된다는 사실을 또한 앞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셸링은 이제, 무제약자가 제약된 자와의 차이 관계를 정립하는 행위를, 무제약자가 제약된 자를 자기 “바깥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이 무제약자 자신과 “동시에 정립”하는 행위, 말하자면 제약된 자를 “무제약자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해명한다.<sup>45)</sup> 그런데 무제약자가 제약된 자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제약자가 자신의 영역의 일부를 제약된 자에게 할애하는 행위,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영역]을 제약하”는 행위로 이해된다.<sup>46)</sup>

요컨대, 셸링은 제약된 자와의 차이 관계를 정립하는 행위를 무제약자의 “자기제약행위”로 이해함으로써, 무제약자가 자기긍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본질 즉 무제약성 자체를 지양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무제약자의 자기제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는 - 『자아』에서 그가 애초에 설정한 과제인 - 자유를 제약성의 원리로서 해명할 실마리를 마련한다. 제약된 자는 이제, 무제약자가 자기를 긍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모순을 스스로 해소하려는 활동성, 이른바 무제약자의 자기제약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산물로 해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셸링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당장 다음과 같은 반문을 불러일으킬

- 
- 45) “이러한 모순은, 자아가 자기 자신을 비아와 동시에 정립함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자아』 AA I/2, 115; SW I, 189), 다음의 인용문도 참조: “따라서 비아의 무한한 영역을 자기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자아의 노력 이외에 아무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비아의 영역은 [자아의 자기정립을 위해] 정립되어야 하며, 정립 행위란 도대체가 오로지 자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아』 AA I/2, 118; SW I, 191 주해).
- 46) “따라서 이를 통해 [= 자아가 자기 안에 비아를 정립함을 통해] 동시에 자아의 제약행위 (Einschränkung)가 일어난다 [이러한 자아의 제약행위를 통해] 자아의 영역은 비록 완전히 지양되지는 않겠지만, 자아의 영역 안에 부정 (Negation), 다시 말해, 한계 (Schranke)가 정립되는 일은 불가피하게 된다” (같은 곳).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무제약자가 제약된 자를 자기 ‘안에’ 정립하는 일은, 제약된 자를 자기 ‘바깥에’ 정립하는 일만큼이나 무제약자로 표현된 자유의 본질과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무제약자라는 규정으로 애초에 드러내려 했던 자유의 본질이란, 그 자신의 바깥에서건 그 자신 안에서건 관계없이, 일체의 제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제약자의 자기제약행위는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 초래하는 역리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역리를 좀 더 첨예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제적 개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더욱이 이러한 지적은 다음과 같은 좀 더 일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애초에 일체의 제약성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자로서 이해되었던 무제약자를 동시에, 그 자신을 자기 아닌 것 - 즉 제약된 자 - 과의 현실적인 차이관계에 놓는 행위의 주체로 이해하는 일이 아무런 모순 없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무제약자에 대한 이러한 모순적인 이해는 애초에 무제약자라는 규정 자체로부터 요구된 것이 아니었던가? 자기모순적인 이해를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무제약자라는 자유의 규정은 처음부터 구제될 수 없는 역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무제약자 개념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무제약성’이라는 자유의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라는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의 이행을 하나의 필연적인 요구로 제시하는 일과 다른 한편으로 이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 실제로 수행되는 방식을, 나아가 이 과정에서 제약성이 정립되는 연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심연이 놓여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유를 제약된 자의 원리로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자아』의 본래 기획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sup>47)</sup>

## IV. 나가는 말

하지만 이상의 예상되는 반문에 대해 셸링은 『자아』에서 어떠한 해명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무제약자의 자기제약행위가 무제약자 자신의 본질과 모순 없이 생각될 수 있는지’의 물음은 이제 막 철학계에 발을 들여 놓은 『자아』의 저자에게는 아직 문제로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이 초기 저작에서 제출된 무제약자의 자기제약행위가 실제로 심각한 역리에 처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sup>48)</sup>고,

47)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제시된 “절대적인 자기긍정”의 실제적인 수행 방식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제약성으로 표현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애초의 이해가 훼손되어버리는 역설에 처하는 『자아』에서의 셸링의 논의는, 자율로서 자유가 실제로 가능한 방식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율 개념으로 드러내려 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애초의 이해 자체가 훼손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칸트의 상황 (본문 II.2 참조)을 좀 더 첨예한 형태로 재현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독해로부터 확인되는 점은, 『자아』에서 셸링은, 자율 개념에 대한 칸트의 해명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가 불가피하게 빠져드는 아포리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48) 이러한 인식이 셸링이 도달하게 되는 일은, 그가 동일성철학이라 불리는 체계의 수립 시도와 이의 좌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자아』를 출간한 지 6년 후인 1801년 셸링은 『나의 철학체계의 서술』(*Darstellung meines Systems der Philosophie*)을 출간하게 된다. 이 저작을 시작으로 하는 동일성철학의 기획은, ‘무제약자의 자기긍정행위는 무제약자 자신의 본질과 어떠한 모순도 수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무제약자 자신의 본질로부터 직접적으로 수행된다’는 테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 수립을 시도하는데 핵심이 있다. 이를 통해 셸링은, 그의 초기 철학에서 무제약자의 자기긍정이 불가피하게 노정시킨다고 했던 모순을 하나의 가상으로서 무화시키고, 이로써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성철학의 기획은 결국, 앞서 언급한 동일성철학의 첫 번째 저서가 출간된 지 5년 후인 1806년에 셸링 자신에 의해 철회된다. 이 해에 발표한 『자연철학이 개선된 피히테 이론과 가지는 참된 관계에 대한 서술』(*Darlegung des wahren Verhältnisses der Naturphilosophie zur verbesserten Fichteschen Lehre*, 특히 SW VII 52-59쪽 참조)에서 셸링은, 1801년 이래로 지속해 온 동일성철학의 기획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비판을 수행하면서, 탈동일성철학적 전회를 처음으로 수행한다. 1806년의 저작에서 수행하는 셸링의 탈동일성철학적 전회의 핵심은 바로 자기긍정과 관련하여 그가 동일성철학에서 제시한 입장에 대한 자기비판과 이에 바탕하는 자기긍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제시에 있다. 여기서 그는 자기긍정에 대한 동일성철학적 이해 즉 “지적인 자기직관”(Intellektuelle Selbstanschauung)으로 표현되는 본질의 직접적인 자기실현행위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자기긍정이란 오히려 본질이 그의 시원적인 순진

이 역리의 해소를 “[자유에 대한 이론적] 탐구 전체의 [성패가 달려 있는] 최고의 지점”(der höchste Punkt der ganzen Untersuchung)으로서 명시적으로 자리매김하<sup>49)</sup>기까지 셸링은 자못 긴 사유의 에움길을 거쳐야 했다.

---

성으로부터 이탈하는 자기부정적인 행위, 이른바 “탈존”(Existenz)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긍정에 대한 이러한 전향적인 이해를 통해 셸링은, 그가 초기 철학에서 단초적으로 제기한 주장 - 즉 “무제약자의 자기긍정행위란 ‘제약성으로부터의 단적인 배제’라는 무제약자 자신의 본질과 결코 모순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는 주장 - 을, 그의 탈동일성철학적 전회를 추동하는 핵심 테제로 재수용하게 된다. 이는 곧, 무제약자의 자기긍정행위라는 자유의 정식이 처한 역리가, 동일성철학적 기획의 좌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첨예한 형태로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셸링은, 1806년의 저작을 기점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자유 개념의 역리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셸링의 1806년 저작을 탈동일성철학적 전회의 시작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Buchheim, 1992, 85-89쪽; 같은 이, 2004, 16쪽 이하 참조).

- 49) 이러한 일을 셸링은, 1806년에 첫 번째 탈동일성철학적 저서가 출간된 지 3년 후인 1809년에 발표된 『인간 자유의 본질과 그와 연관된 대상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들』(*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und die damit zusammenhängenden Gegenstände*)에서 수행한다. 이 저작에서 셸링은, 그의 1806년의 저작을 통해 좀 더 첨예하게 드러나게 된 자유 개념의 역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일원론이라는 종래의 동일성철학의 체계와 구분되는 새로운 체계 모델, 이른바 “내재적 이원론”(Interner Dualismus)을 제시하게 된다 (내재적 이원론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Hermann, 1994, 71-94). 탈존 즉 본질의 시원적인 순진성으로부터 이 본질 스스로가 이탈하는 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위해 자유의 본질은, 동일성철학에서와는 달리, 애초부터 두 가지 상이한 기능적 계기들 간의 내적 구분 - 이른바 “탈존하는 자 그 자체”(das Existierende selbst)로서의 본질 계기에 대한 “탈존의 근거”(Grund der Existenz)로서의 본질 계기의 내적 구분 -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SW VII 357쪽 참조). 그런데 탈존을 해명하기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자유의 본질의 내적 구분은, 애초에 그로부터 탈존이 요구되었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 - 즉 제약연관 또는 차이관계로부터의 전적인 배제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무차별성” 또는 “절대적 무차별성” - 와 다시금 모순된다는 점에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시도는 또 다시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셸링은 지적한다. 자유 개념의 이론적인 해명의 시도 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되는 이러한 역리에 직면하여 결국 그는, 이러한 역리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 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점, 이른바 “[자유에 대한 이론적] 탐구 전체의 최고 지점”(der höchste Punkt der ganzen Untersuchung)임을 1809년의 자유저작 말미에서 천명하기에 이른다 (SW VII, 406쪽 참조). 이로써 셸링은, 절대적 무차별성으로 이해되는 자유의 시원적인 본질이 동시에 - 그로부터 탈존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기 위해 - 내적인 차이를 가정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요구가 내포하는 모순을 해소하는 일을 1809년의 저작 이후의 철학적 탐구를 위한 제일 과제로 설정한다.

더욱이 무계약자의 자기계약이라는 자유의 정식이 처해 있는 역리관, 결코 단일한 이론 체계를 수립함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의 시도로부터 초래된 결과였다는 사실, 그리고 단일한 이론 체계의 수립을 통한 자유의 해명 시도는, 자유의 본질 자체가 애초부터 내포하는 지평적인 차이 관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결국에 가서 인식하<sup>50)</sup>기까지 그는 앞서 걸어 온 것 이상으로 길고도 수고로운 사유의 여정을 또 한 번 겪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내포하는 어려움에 대한 셸링의 통찰이, 지금까지 살폈듯이, 이미 『자아』에서 원형적인 모습으로 내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50)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최초의 시점을 필자는, 앞선 각주에서 언급한 1809년의 자유저작에서 셸링이 자유 개념의 역리를 해소하는 일을 자유의 이론적 탐구 전체의 최고 지점으로 자리매김한 지 12년이 지난 1821년으로 본다. 이 해 겨울 에얼랑엔 대학에서 행한 강의(강의명: “보편철학대강”(initia philosophiae universae))에서 셸링은 절대적 무차별성 - 또는 절대적 무계약성 - 으로 표현된 자유의 시원적인 본질을 ‘오로지 차이관계 - 또는 제약연관 - 의 전적인 배제로만’ 이해해 온 종래의 입장을 비판하고, 무차별성이라는 사태는 애초부터 두 가지 상이한 층위 내지는 지평에 놓여 있는 무차별성 간의 차이관계를 내용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즉 무차별성이란, 단적인 무차별성이라는 단일한 사태로 이해될 수 없고, 이 ‘단적인 무차별성에 대한 무차별성’이라는 좀 더 깊은 층위의 무차별성을 자신의 내실로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셸링의 주장이다. ‘무차별성에 대한 무차별성’으로 표현되는 이 좀 더 근원적인 무차별성이란, 그에 따르면, ‘차이관계로부터 단적으로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는 절대적인 비결정성 또는 절대적인 불확실성의 상태를 의미한다. 무차별성 자체가 애초부터 지평적인 차이관계를 내용으로 가진다는 통찰에 바탕하여 셸링은 이제, 탈존의 가능성을 위해 요구되었던 본질의 내적 차이를 무차별성이라는 자유의 시원적인 본질로부터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하지만 자유의 시원적인 본질이 내포하는 지평적 차이관계에 대한 셸링의 새로운 통찰은 동시에, 자유의 본질에 대한 해명은 결코 단일한 이론 체계를 통해 온전히 수행될 수 없고, 두 가지 상이한 본질 지평에서 각각 출발하여 상대편의 본질 지평으로 향해 가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1821년의 에얼랑엔 강의에서 셸링이 제시하는 입장은, 그가 1827년에 행한 뮌헨 강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그의 후기철학 즉 단일한 이론적 체계로 자유를 정당화하려는 지금까지의 시도를 포기하고, 두 가지 상이한 이론적 정당화 방식의 구분 - 이른바 “긍정철학”(Positive Philosophie)과 “부정철학”(Negative Philosophie) 간의 구분 - 을 도입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자유의 본질구조에 대한 1821년의 에얼랑엔 강의에서의 셸링의 새로운 통찰에 대해서는 initia, 69-173 쪽 참조.

274 논문

그의 기나긴 사유 여정은 이미 이 저작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투 고 일: 2016. 07. 18  
심사완료일: 2016. 07. 29  
계재확정일: 2016. 07. 29

이정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참고문헌

### 1. 셸링 문헌들

*Sämtliche Werke*, Schelling, Karl Friedrich August 편집, 1. Abteilung Bd. 1-10, II. Abteilung Bd. 1-4. Stuttgart und Augsburg 1856-1861 (= SW 권수, 쪽수).

*Historisch-Kritische Ausgabe*. Im Auftrag der Schelling-Kommission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Baumgartner, H. M., Jacobs, W.G., Krings, H., Zeltner, H. 편집, Stuttgart-Bad Cannstatt 1976ff. (= AA I/권수, 쪽수).

*Initia philosophiae universae. Erlanger Vorlesung WS 1820/1821* Horst Fuhrmans 편집 및 주해. Bonn 1969 (= *initia*, 쪽수).

*Briefe und Dokumente*, Horst Fuhrmans 편찬, 2권: 1775-1803 Zusatzband. Bonn 1973. (= Fuhrmans, 1973, 쪽수)

### 2. 기타 문헌들

강영안, 「셸링의 초기 철학에서 자아와 철학」, 『철학연구』 26권 1990, 221-242쪽.

박영선, 「초기 셸링의 칸트 수용과 비판: 『철학 일반의 형식의 가능성에 대하여』와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에 대하여 혹은 인간 지식에서의 무제약자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칸트연구』 21권 2008, 127-161쪽.

이광모, 「‘자아철학’에서 ‘절대자의 철학’으로: 셸링 철학의 출발점에 대한 고찰」, 『칸트연구』 32권 2013, 223-246쪽.

Allison, Henry, “Morality and Freedom. Kant’s Reciprocity Thesis”, in: *The Philosophical Review* 95 1986, 393-425쪽.

Berlin, Isaiah, "Two concepts of liberty. An inaugural Lecture on 31. Oct. 1958",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Bojanowski, Jochen, *Kants Theorie der Freiheit. Rekonstruktion und Rehabilitierung*, Berlin/New York 2006.

Brandt, Reinhard, *Immanuel Kant - Was bleibt?*, Hamburg 2010.

Brülisauer, Bruno, *Der Begriff des Absoluten in der neuzeitlichen Philosophie*. Bern 1969.

Buchheim, Thomas: *Eins von Allem: Die Selbstbescheidung des Idealismus in Schellings Spätphilosophie*. Hamburg 1992.

\_\_\_\_\_, Grundlinien von Schellings Personbegriff. in: Buch heim, Thomas/ Hermanni, Friedrich (hg.): *'Alle Persönlichkeit ruht auf einem dunkeln Grunde'*. *Schellings Philosophie der Personalität*. Berlin 2004. S.11-34쪽.

Düsing, Klaus, "Spontanität und sittliche Freiheit bei Kant und Fichte", in: Ders./ Edith Düsing (편저): *Geist und Willensfreiheit. Klassische Theorien von der Antike bis zur Moderne*. Würzburg 2006.

Fetzer, Dirk, *Jacobis Philosophie des Unbedingten*. Paderborn 2007.

Fichte, Johann Gottlieb, *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Hamburg 1997 (<sup>1</sup>1795).

Henrich, Dieter, "Zum Stand der Kant-Forschung", in: *Information Philosophie* I. 2004.

Hobbes, Thomas, *Leviathan*. Deutsche Übersetzung von Mayer, J.P. mit Nachwort von Diesselhorst, M. Stuttgart 1980.

Hermanni, F., *Die letzte Entlastung. Vollendung und Scheitern des abendländischen Theodizeeprojektes in Schellings Philosophie*, Wien 1994.

Jacobi, Friedrich Heinrich, *Ueber die Lehre des Spinoza in Briefen an den*



- Herrn Moses Mendelssohn*, 2. Auflage. Breslau 1789.
- Jacobs, Wilhelm G., das Absolute, in: Sandkühler, H.J. u.a. (편저):  
*Enzyklopädie Philosophie*. Bd.1, Hamburg 2010.
- Kant, Immanuel, *Gesammelte Schriften*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편집. Berlin 1904ff. (= Kant-AA 권수, 쪽수).
- \_\_\_\_\_, 『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1.
- \_\_\_\_\_,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 \_\_\_\_\_, 『윤리형이상학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 Korsgaard, Christine, *Self-Constitution. Agency, Identity, and Integrity*,  
Oxford 2009.
- Krings, Herman, “Freiheit”, in: Baumgartner, H. M., Krings, H., Wild,  
Ch. (편저):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Bd.2,  
München 1973.
- Loer, Barbara, *Das Absolute und die Wirklichkeit in Schellings  
Philosophie. Mit der Erstedition einer Handschrift aus dem  
Berliner Schelling-Nachlass*, Berlin 1974.
- Noller, Jörg, *Die Bestimmung des Willens: Zum Problem individueller  
Freiheit im Ausgang von Kant*. München 2015.
- Ortwein, Birger, *Kants problematische Freiheitslehre*, Bonn 1983.
- Patzig, Günter, “Philosophische Bemerkungen zum Begriff der Autonomie”,  
in: *Praxis der Psychotherapie und Psychosomatik* 30, 11-20쪽.
- Popper, Karl Reimund, *Die offene Gesellschaft und ihre Feinde, Teil 2:  
The high tide of prophecy: Hegel, Marx and the aftermath*.  
Routledge, London 1945. Auf Deutsch als *Falsche Propheten:  
Hegel, Marx und die Folgen*. München 1958, Bd.2.
- Pruss, Gerold, *Kant über Freiheit als Autonomie*, Frankfurt a. M., 1983.
- Reinhold, Carl Leonhard, *Briefe über die Kantische Philosophie*, Zweiter

Band, Leipzig 1792.

Riedel Manfred, “Freiheit und Verantwortung. Zwei Grundbegriffe der kommunikativen Ethik”, in: Baumgartner H.M (편저.): *Prinzip Freiheit. Eine Auseinandersetzung um Chancen und Grenzen transzendentalphilosophischen Denkens; zum 65. Geburtstag von Hermann Krings*, Freiburg/München 1979.

Sandkaulen, Birgit, *Ausgang vom Unbedingten: Über den Anfang in der Philosophie Schellings*. Göttingen 1990.

\_\_\_\_\_, *Grund und Ursache. Die Vernunftkritik Jacobis*, München 2000.

Schmid, Carl Christian Erhard, *Versuch einer Moralphilosophie*, Jena 1790.

Schmidt, Andreas, “Wille und Willkür: Zum Begriff der Willensfreiheit in der Frühphilosophie Schellings”, in: Hermanni, Friedrich, Koch, Dietmar, Peterson, Julia (편저): *»Der Anfang und das Ende der Philosophie ist – Freiheit!«: Schellings Philosophie in neuerer Forschung*. Tübingen 2012.

Schulte, Christoph, *Radikal Böse. Die Karriere des Bösen von Kant bis Nietzsche*, München 1988.

ABSTRACT

Freedom Is a Self-contradictory Notion  
–Schelling’s insight into the self-contradictoriness  
of the notion of freedom in his early philosophy-

Lee, Joung-Hw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how Schelling’s insight into the self-contradictoriness of the notion of "freedom" emerges in his early philosophy. First, as an introduction to this discussion, I will show that the attempt to define "freedom" conceptually leads inevitably to absurdity and self-contradiction. More specifically, I will demonstrate this by critically examining Kant’s argument of the "positive concept of freedom." Second, I will take one of Schelling’s early writings, *Vom Ich als Prinzip der Philosophie oder über das Unbedingte im menschlichen Wissen* (1795), as an exemplary model of how the difficulty with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freedom emerges as a main issue of philosophical concern. By tracing Schelling’s thought in his early work, I will argue that Kant’s aporia, concerned with the notion of freedom, is in fact treated as a main topic in the early stages of Schelling’s philosophy.

**Subject Class:** German Idealism, Theory of Freedom

**Keywords:** Autonomy, Emancipation, Freedom, Self-Determination,  
the Unconditional (das Unbedingte)